

문서번호 : 리테일마케팅본부-2025-36

2025.02.24

참 조 : 상품기획 관련 담당 부서장

제 목 :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 및 처분 공시

1. 귀 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당사에서 운용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 및 처분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대상펀드명:
- 하나글로벌리츠온리원부동산자[재간접형]

나. 내역:

펀드	종목명	매매일자	매매구분	매매수량	단가	매매금액	자산총액	통화
				(주, 좌)	(연지통화)	(백만원)	비중	
하나글로벌리츠온리원부 동산자[재간접형]	VENTAS INC	2025-02-21	취득	485	67.02	46.62	0.99%	USD
	ALEXANDRIA REAL ESTATE EQUITIES	2025-02-21	처분	158	95.54	21.65	0.46%	USD
	EASTGROUP PROPERTIES	2025-02-21	취득	180	179.60	46.37	0.99%	USD

* 상기 매매내역은 하나글로벌리츠온리원부동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 펀드의 매매 내역임

다. 근 거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9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6호 나

자본시장법

제89조(수시공시)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. <2009. 2. 3., 2011. 8. 4., 2021. 4. 20.>

시행령 제93조

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<개정 2009. 2. 3., 2010. 6. 11., 2015. 10. 23., 2017. 5. 8., 2022. 8. 30.>

6.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
나.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끝.

하나자산운용(주)

대표이사 김 태 우



수신처 : 하나은행, 하나증권